

위 원 회

목 차

1. 위원회설치규정
2. 교무위원회규정
3. 교과과정심의위원회규정
4. 학술위원회규정
5.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6.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규정
7. 학생지도위원회규정
8. 장학심의위원회규정
9. 학생상벌심의위원회규정
10. 학생취창업지도위원회규정
11. 교원인사위원회규정
12. 교원징계위원회규정(폐지)
13. 직원징계위원회규정
14. 일반직원재심위원회규정
15. 예산·결산자문위원회규정(폐지)
16. 건설위원회규정
17. 시설공간조정위원회규정
18. 기자재심의위원회규정
19. 경주대학교기획위원회규정
20. 경주대학교발전기금조성위원회규정
21. 대외협력위원회규정
22. 국제교류위원회규정
23. 학생정원조정위원회규정
24. 대학자체평가위원회규정
25. 갈등조정위원회규정
26.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규정
27. 연계교육운영위원회규정
28. 예산조정위원회규정
29.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30. 외국인유학생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31. 사회봉사운영위원회규정
32. 외국인유학생유치위원회규정
33. 구조조정위원회규정
34. 직원인사위원회규정
35.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36.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규정
35. 생명윤리위원회규정
36.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규정

위원회설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행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법령·학교법인원석학원정관 및 경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학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치)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관련부서장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처장의 합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부서장은 기획처에 승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7.10.18>

1. 신청서(목적, 기능, 구성, 운영, 기타 필요사항 등 기재)
2. 설치할 위원회의 규정(안)

제4조(구성)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우에 따라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부서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관계부서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간사가 이를 관리하며, 회의록에는 각 위원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해산) ①위원회는 관련 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승인함으로써 해산된다.

②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목적을 완료함과 동시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 중인 위원회 규정은 규정류 제정 절차에 의거 변경 보완하여야 한다.

위원회설치규정 4-0-1~2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교무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7조 제3항에 의거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는 경주대학교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입학처장](#), 국제교류처장, [취·창업능력개발처장](#),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학술정보원장, 정보화책임관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9.1, 2006.3.1, 2008.10.1, 2011.3.1., 2012.7.1., 2013.3.1., 2014.8.27., 2015.3.26., 2016.3.17., [2017.10.18](#)>

②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총장의 유고시에는 [기획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6.3.1, 2008.10.1, 2011.3.1., 2013.3.1., 2014.8.27., [2017.10.18](#)>

③위원회의 간사는 교무처 소속 교직원이 된다. <개정 2003.9.1, 2007.3.1., 2009.12.1., 2014.8.27>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학부(과), 부속·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3.9.1>
2. 학칙변경 및 제반규정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함.
3. 입학,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자 출석)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계있는 교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교과과정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 교과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연구, 심의하는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3.1., [2013.3.1](#)>

②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개정 2011.3.1., [2013.3.1](#)>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09.12.1>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과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의 연구와 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연구·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의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지출석) 위원3인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학부(과)장 또는 교수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연구비) 위원 및 분과위원에게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교과과정심의회규정 4-0-3~2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술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교원 중에서 직위와 계열을 고려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3.1., 2013.3.1>

②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개정 2011.3.1., 2013.3.1>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사지원팀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1>

제3조(위원장의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표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평가·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심의한다. <개정 2005.1.1>

1. 학술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
2. 학술연구과제 선정
3. 학술연구결과 평가
4. 학술연구비 지급중지 및 반환
5. 연구년 운영 및 연구교원의 선정
6. 부설연구소 등의 실적 평가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세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학술위원회규정 4-0-4~2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편입학 전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13.3.1., 2014.8.27., 2016.3.17., 2017.10.18>

②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원 중에서 입학전형관리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1., 2014.8.27., 2016.3.17., 2017.10.18>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입학관리실장이 된다. <개정 2008.10.1., 2009.12.1., 2016.3.17., 2017.10.18>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
2. 대학입학 전형관리 기술의 개발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
5. 대학입학 정보의 개발과 홍보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토록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수집) 위원은 대학입학전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연구비) 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세부사항)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외국인유학생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설치된 외국인유학생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0.1>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4-0-5~2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0조에 의거 경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입학전형의 공정관리 대책수립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②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되 입학전형을 직접 관리하는 자로 위촉할 수 없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기획조정실 직원이 된다. <개정 2009.12.1., [2016.3.17](#)>

제3조(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부정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자체감사) 위원회에서는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한다.

제7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위원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지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고 학생활동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개정 2011.3.1., 2013.3.1., 2016.3.17., [2017.10.18](#)>

③위원은 방송신문사 주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9.1, 2009.12.1>

④간사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08.10.1, 2009.12.1, 2011.3.1>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회 각 자치단체의 활동 및 운영지도
2. 학생회 회칙 제정 및 개정
3. 학생자치단체 설립의 승인 및 폐지
4. 학생단체(동아리)의 등록 및 운영지도
5.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결정)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세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지도위원회규정 4-0-7~2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학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장학금규정 제5조에 의하여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11.3.1., 2013.3.1., 2016.3.17., [2017.10.18](#)>

③위원은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0.1, 2011.3.1., 2013.3.1., [2017.10.18](#)>

④간사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08.10.1, 2009.12.1, 2011.3.1>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에 관한 기본 방침
2. 장학금 수혜자의 자격요건
3. 장학생수 배정 및 지급액
4.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위원회는 매학기 말에 소집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결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세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학심의위원회규정 4-0-8~2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포상과징계에관한규정 제7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학생상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11.3.1., 2013.3.1., 2016.3.17., [2017.10.18](#)>

③위원은 교무처장, 취·창업능력개발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2.1, 2011.3.1., 2013.3.1., 2015.3.26., [2017.10.18](#)>

④간사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08.10.1, 2009.12.1, 2011.3.1>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한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학생처에서 발의 결정 후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3.1., 2013.3.1., 2016.3.17., [2017.10.18](#)>

제7조(결정)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세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상벌심의위원회규정 4-0-9~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취창업지도위원회규정

<규정명 변경 2015.2.16>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주대학교 학생 및 졸업자의 취업대책을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학생취창업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 2015.2.16>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취·창업지원혁신센터 장, 교육개발혁신센터장, 진로·심리상담지원혁신센터장을 포함한 교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2.16>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취·창업지원혁신센터장이 되고 간사는 취·창업지원혁신센터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5.2.16>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2.16>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15.2.16>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2.16>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취업활성화 정책수립 및 추진
2. 졸업(예정)자의 취업상황 파악 및 취업알선과 대책 수립
3. 취업 상담 및 지원의 기본 방침 수립과 실천
4. 기업체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방안 수립
5. 취업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6. 취업관련 정부사업 신청 및 운영
7. 취업정보의 수집과 분석
8. 취업정보 수집 제공 및 취업 추천 활동
9.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등 환류 프로그램
10. 기타 취업지도에 관련된 사항

제6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2.16>

제7조(세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2.16>

학생취창업지도위원회규정 4-0-10~2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 의거 본 대학교 교원(총장은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10.1.,[2012.7.22.](#)>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면하고자 할 때에의 임면제청동의에 관한 사항
2. 교원승진에 관한 사항
3.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등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의 변경 및 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교수연구 및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3조(구성 및 임기) ①인사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개정 2011.3.1.,
[2013.3.1.](#)>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총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7조(간사)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교원인사 담당 행정부서 팀장을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1>

제8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유지) ①위원회의 결의 내용만을 공개하며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토론과정과 표결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회의에 참석한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득한 회의내용 및 관련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고 이를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징계위원회규정(폐지)

제1조(목적) ~ 제13조(간사) <폐지 2009.4.1>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폐지한다.

직원징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직원징계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인사질서의 확립을 기하고 신분보장의 적정을 위하여 직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정원) ①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에 직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6인(위원장 1인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선임과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의 임명 및 직무) ①간사는 인사담당 주임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5조(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 중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경우와 징계혐의자와 친족 관계가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기간) 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그 통지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장에게 송달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심문과 진술권) ①위원회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결통고)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임면권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종전에 시행하던 경주대학교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당시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석 통지서

인적 사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함.				
경주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주대학교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절취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 사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경주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일반직원재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일반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재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법인 임직원

제3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재심의 청구 등) ①일반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 후에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심위원회 심사) ①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재심위원회가 재심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기관이나 관계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7조(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 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8조(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9조(재심위원회 결정) ①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심사 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1조(재심심사 결정서 송부) ①재심심사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재심 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재심심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 없이 재심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 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재심 결정의 효력)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13조(위원 수당 등) 재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위원회 간사 등) ①재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5조(운영세칙)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6월 23일(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 심 의 결 서

개 회 일 시		개 회 장 소													
정 계 협 의 자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재심의결 주 문															
이 유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재심 의결함.</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학교법인 원석학원 일반직원재심위원회</p>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right: 20px;">위원장</td> <td>(인)</td> </tr> <tr> <td>위 원</td> <td>(인)</td> </tr> <tr> <td>간 사</td> <td>(인)</td> </tr> </table>				위원장	(인)	위 원	(인)	간 사	(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예산·결산자문위원회규정(폐지)

제1조(목적) ~ 제6조(간사) [〈폐지 2009.12.1〉](#)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각종 시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치, 규모, 용도, 조경, 환경 및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기능)

1.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합리적인 배치, 위치 이동, 시설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전기, 통신, 급·배수, 냉·난방, 환경, 조경 기본시설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본 위원회의 위원은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직능별 전임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약간 명을 객원자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되, 궐위 시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7.3.1, 2008.10.1〉

②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본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사용할 부서장과 건축관리 담당부서의 직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본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록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3.1, [2009.12.1](#)〉

제8조(조사 연구의뢰) 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위원회규정 4-0-16~2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설공간조정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위하여 경주대학교 시설공간조정 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공간이라 함은 경주대학교 내의 건축물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이나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구성)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 또는 관련 전공 교수로 하고, 간사는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3.1, [2009.12.1](#)>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기록 및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의 장이나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문케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본 위원회는 공간의 공개념 원칙 하에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합리적인 공간배치 및 활용
2. 공간사용에 관한 조정 및 구조 변경 사용 승인

제6조(심의사항) 본 위원회에서는 전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의 배정, 활용에 관한 사항
2. 공간의 용도 및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증축 공간의 용도 배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시설운영의 기본방향 및 시설배정 기준면적 설정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세부운영사항) 본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설공간조정위원회규정 4-0-17~2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자재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기자재의 구매, 도입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정하고 보유 기자재의 합리적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경주대학교 기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기자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3.1, 2009.3.1>

제3조(위원임기) ①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1, 2011.3.1., [2013.3.1](#)>

②결원이 발생할 시는 후임자를 보충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자재 도입 및 구매에 관한 사항
 - 가. 기자재 구매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나. 기자재 구매의 규모 및 품목의 적합성
 - 다. 보유 기자재의 전용, 공동사용 가능 여부 및 국산품 대체 구입 가능 여부
 - 라. 기자재 운용예산, 관련기술 및 요원의 확보대책 강구 여부
 - 마. 고장수리, 대체 등에 대한 사후 관리책 강구 여부
 - 바. 기자재의 생산국, 규격, 성능 등의 적정 여부
 - 사. 기자재의 활용 증대를 위한 관리, 공동사용, 관리전환 등 종합 조정
2. 기자재 사후 관리에 대한 조정
 - 가. 기자재의 불용품 판정에 대한 사전 조정
 - 나. 불용품의 사용전환, 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의 처분에 대한 종합 조정
 - 다. 통합 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실험/실습설비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호 및 제2호 가 내지 나 의 기자재 도입 및 구매 또는 사후관리 대상 기자재 금액(단가기준)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료요청 및 조사)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본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록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회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3.1, 2009.3.1., 2009.12.1., [2017.10.18](#)>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경주대학교기획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을 경주대학교의 장단기발전계획(안)을 심의·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경주대학교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에 의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8.10.1>

1.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개정 2017.10.18.>
2.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3. 간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직원이 된다. <개정 2009.12.1., 2010.4.1., 2016.3.17>

제3조(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연구 추진한다.

1. 장단기발전계획에 관한 제반 사항
2. 학제 및 학사행정의 연구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구조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업무협조) 위원회는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분과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수당)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업무협조)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8.10.1., 2017.10.1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개혁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경주대학교기획위원회규정 4-0-19~2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경주대학교발전기금조성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 발전기금을 조성·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주대학교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본교 교직원과 동문, 학생대표 및 각계유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실 직원이 된다. <개정 2008.10.1., 2009.12.1., 2016.3.17>

제4조(위원회의 임원)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감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5.7.1, 2008.10.1>

③부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7.1., 2008.10.1., 2017.10.18>

④감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감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인 위원 임기는 그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경주대학교의 발전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위원회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위원회가 조성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2. 장서확충(도서기금)
3. 장학금
4. 연구기자재 확충
5. 시설보완 및 확충
6. 교직원 복리후생
7. 기타 기부자가 희망하는 용도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을 겸임하며, 회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운영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후원회) 위원회의 발전기금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회계) ①위원회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처리하고 위원회가 관장한다.

②위원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을 준용한다.

③위원회의 회계년도는 학교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명예의 보존) ①위원회는 일정액 이상의 발전기금출연자의 명예를 길이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본 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대외협력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국내대학간의 교류를 포함한 산·학·연 협력(이하 “대외협력”이라 한다)등의 대외협력사업의 기획, 개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8.10.1., [2017.10.18](#)>

③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3.1., 2013.3.1>

④간사는 기획조정실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1., 2009.12.1., 2016.3.17>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직만료시 후임자는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외협력에 대한 신규사업의 기획, 개발
2. 대외협력을 위한 협정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투자 및 대응투자
4. 협력사업의 예·결산 및 실적의 평가
5. 대외협력에 의한 기술이전 관련사항
6. 대외협력 참여자의 지정 및 연구원의 선임과 해임
7. 대외협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8. 대외협력 기금의 조성 및 관리
9. 기타 협력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사회봉사분과위원, 산·학·연 분과위원, 국내대학협력분과위원 등을 둘 수 있으며,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3.9.1., 2008.10.1.,

2009.12.1., 2016.3.17>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제교류위원회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주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07.11.1〉

제2조(목적) 위원회는 경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국제교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 학교법인원석학원정관과 본 대학교 학칙 및 위원회 설치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4.3.1, 2006.7.1, 2007.11.1, 2008.10.1, 2011.3.1., 2013.3.1., 2016.3.17., [2017.10.18](#)〉

②위원장은 국제교류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1.1, 2009.12.1, 2011.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정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 협정기관과의 교직원 및 학생의 상호 파견, 방문 연수 등에 관한 사항
4. 본 대학교 재학생의 외국대학 수학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03.3.1〉
5. 외국인 학생의 본 대학교 수학승인 및 체류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3.3.1, 개정 2004.3.1〉
6. 장학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3.3.1〉
7. 기타 국제교류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단다. 〈개정 2004.3.1〉

②간사는 국제교류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3.1, 2017.10.18〉

2006.7.1, 2009.12.1, 2011.3.1>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정원조정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 학생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학생정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8.10.1., 2013.04.23., 2014.04.16., 2017.10.18>

③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사지원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10.1, 2009.12.1, 2011.3.1., 2013.3.1., 2013.04.23., 2014.04.16., 2016.3.17., 2017.10.18>

④간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직원이 된다. <개정 2008.10.1, 2009.12.1., 2010.4.1., 2016.3.17>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②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9.12.1., 2016.3.1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시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 자체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3조(기획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기획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학술정보원장, 정보전산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2인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개정 2011.3.1., 2013.3.1., 2016.3.17., [2017.10.18](#)>

③간사는 기획처 직원이 된다.<개정 [2017.10.18](#)>

④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자체평가 기본방향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학 전체 구성원들에 대학자체평가 중요성 및 인식고취
3. 대학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심의
4. 대학자체평가 총장 결과보고 및 개선 건의

제4조(연구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연구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위원장은 기획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기획처 직원이 된다.<개정 [2017.10.18](#)>

④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자체평가의 분야별 연구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2. 대학자체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개발
3. 대학자체평가관련 자료 수집 분석 및 담당영역별 연구
4. 대학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집필

제5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자체평가 관련부서의 장 또는 실무직원으로 기획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사무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간사는 기획처 직원이 된다.<개정 [2017.10.18](#)>

④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자체평가 실시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2. 대학자체평가에 관련된 제반자료 생성 취합 및 제공
3. 대학자체평가 실무행정지원

4.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집필 지원

제6조(연구위원 대우) 총장은 연구위원인 교수의 활동내용을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연구비 및 수당) ①각 위원회의 위원(위원장 포함)에게는 연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비 및 수당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기획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연구위원장은 연구위원회를 대표하며 연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연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기획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기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총장은 2000학년도 대학자체평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위원장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갈등조정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각 부서간 행정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4.23., 2014.04.16>

②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처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13.04.23., 2014.04.16>

③간사는 [기획조정실](#) 직원이 된다. <개정 2009.12.1., [2016.3.17](#)>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갈등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①전반적인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

②각 부서간 업무분장 및 행정상 의견대립에 관한 사항

③기타기관, 부속·부설시설 및 연구소와 관련된 행정조정 사항

제5조(조정요청) 본 대학교 각 부서간 행정사항과 관련된 갈등이 있을 경우 별첨 서식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6.3.17](#)>

제6조(심의·조정) ①위원회는 조정 요청된 갈등사항을 30일 이내에 심의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갈등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청 부서와 갈등과 관련된 부서 또는 관련자에게 관련자료 제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적위원 ⅔출석과 출석위원 ⅔찬성으로 갈등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교무위원회에 회부를 의결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회부결과에 따라 심의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갈등사항이 전문성을 요구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연구 검토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제8조(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되어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결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위원회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9.12.1., [2016.3.17](#)>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 및 심의하는 교양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3.1., 2013.3.1>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09.12.1>

④기초교양, 정보화 교양 및 일반교양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 하거나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계자 출석에 관하여 위원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학부(과)장 또는 교수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한다.

1. 교양교과과정 개선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교양교과목 강의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양교과목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
4. 교양교과목 강사 위촉·교육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교양교과목 교수법 개발에 관한 사항
6. 교양교과목 교재의 저술·제작·편집에 관한 사항
7. 교양과목 교수를 위한 시설, 기자재의 운용 및 확충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수당 및 연구비) 위원 및 분과위원에게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규정 4-0-26~2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계교육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4조의 연계교육에 의한 편입학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계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처장, 입학처장, 관련 학부(과)장 중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하며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0.1, 2009.12.1, 2011.3.1., 2013.3.1., 2016.3.17., [2017.10.18](#)>

③총장은 우리 대학교와 연계교육협정을 체결한 전문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계교육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2. 연계교육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안 마련
3. 연계교육 대상학과 선정 및 모집인원 조정
4. 연계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방안
5. 연계교육과정 이수학생의 편입학 지원학생 선발 방안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학부연계교육운영위원회) ①위원회의 하부에 연계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학부(과)별로 연계교육운영위원회(이하 “학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학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장인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 각 1인과 연계교육 협력체결대학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③학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대상인원 선발 및 우선 입학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 및 연계운영과목 선정에 관한 사항
3. 강좌개설 및 교육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
4. 공동교재개발 및 학점인정 방안에 관한 사항
5. 교원상호지원 계획 및 시설·설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의결 사항의 집행) 학과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위원회를 경유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8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학부운영위원회의 사무는 해당 학부에서 각각 관장한다.<개정 2011.3.1., 2013.3.1>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예산조정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재정수요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균형예산의 편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각 처장 및 대학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10.1., 2013.04.23., 2014.04.16., [2017.10.18](#)>

③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간사는 기획조정실 직원이 된다. <개정 2008.10.1., 2009.12.1., 2016.3.17>

제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본 대학교 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각 예산단위부서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2. 각 예산단위부서의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 포함) 검토 및 계수 조정
3. 종합예산 범위 내 수지 균형을 위한 심의 조정
4. 기타 예산편성에 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산조정위원회규정 4-0-28~1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원석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1조2 내지 제31조6에 따른 경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평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8.1.21>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1>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1>
7.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1>
8.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1.21>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 및 자격) ①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4명(이하 “교원 평의원”이라 한다.)
2. 직원 - 4명(이하 “직원 평의원”이라 한다.)
3. 학생 - 4명(이하 “학생 평의원”이라 한다.)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이하 “외부 평의원”이라 한다)-1명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평의원은 경주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직원 평의원은 경주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학생 평의원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잔여 재학기간이 1년 이상인 재학생

③교원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및 연구년 교원

④학생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교환학생 파견, 현장실습수업 참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교내에서의 학업이 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4조(평의원의 선출) ①교원을 대표하는 4명의 평의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총장은 평의원 선출을 위한 전체교수 임시회의의 개최를 공고하며, 개최 5일전에 개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포함한 중요사항을 공고한다.

2. 전체교수 임시회의의 구성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3. 임시회의의 사회는 교무처장이 맡아 의장 1인을 포함한 임시선거관리 위원 3인을 선발한다. <개정 2008.1.21, 2011.3.1., 2012.7.22., **2013.3.1**>

4. 임시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은 평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포한다.

5. 투표방식은 연기명 투표로 하며, 평의원 정수 이하로 기표한다.

②직원을 대표하는 4명의 평의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총장은 평의원 선출을 위한 전체직원 임시회의의 개최를 공고하며, 개최 5일전에 개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포함한 중요사항을 공고한다.

2. 전체 직원 임시회의의 구성은 정규직원으로 하며, 계약직원을 포함한다.

3. 임시회의의 사회는 사무처장이 맡아 의장 1인을 포함한 임시선거관리위원 3인을 선발한다. <개정 2008.1.21>

4. 임시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은 평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포한다.

5. 투표방식은 연기명 투표로 하며, 평의원 정수 이하로 기표한다.

③학생을 대표하는 4명의 평의원 선출 방법은 총학생회 대표에게 선출을 위임하되, 총학생회 대표는 평의원을 선출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6조(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

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각 구성단위 추천권자라 함은 교원평의원은 교무처장(학사지원팀), 직원평의원은 사무처장(총무회계팀), 학생평의원은 총학생회 대표(학생지원팀)라 한다. <개정 2008.1.21, 2008.9.1, 2009.12.1, 2011.3.1., 2013.3.1., [2017.10.18](#)>

제7조(평의원의 사임) 평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2회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①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①의장은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간사는 [기획처](#) 기획조정실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8.9.1, 2009.4.16.,

2009.12.1., 2016.3.17>

③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4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제15조(개방이사 추천) 의장은 정관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 받은 때에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제15조의 2(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제15조의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는 경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개정 2008.1.21>

제16조(개방이사 후보자) ①개방이사 후보자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한다. <개정 2008.1.21>

②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 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③평의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8조(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다. <개정 2008.1.21>

제19조(개방감사 추천) 개방감사 후보자의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내규)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최초 평의원의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최초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4조 제②항의 간사는 2007년 2월 28일까지 사무처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유학생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 유학생의 신·편입학 전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유학생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학원장, 교무처장, 입학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3.1., 2013.3.1., 2016.3.17., 2017.10.18>

②위원장은 국제교류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원 중에서 외국인유학생입학전형관리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2.1, 2011.3.1>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국제교류처 직원이 된다. <개정 2009.12.1, 2011.3.1>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외국인특별전형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
2. 외국인특별전형 대학입학 전형관리 기술의 개발
3. 외국인특별전형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4. 외국인특별전형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
5. 외국인특별전형 대학입학 정보의 개발과 홍보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토록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수집) 위원은 외국인유학생대학입학전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연구비) 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외국인유학생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4-0-30~2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봉사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사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사회봉사활동의 운영 및 사회봉사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회봉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사회봉사활동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3.1., 2013.3.1., 2016.3.17., [2017.10.18](#)>

②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11.3.1., 2013.3.1., 2016.3.17., [2017.10.18](#)>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봉사단 소속 교직원이 된다.<개정 2011.3.1., 2014.8.27.>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총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세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봉사운영위원회규정 4-0-31~2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유학생유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 외국인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연구·심의하는 외국인유학생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제교류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외 위원은 교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3.1>

②위원장은 국제교류처장이 된다.<개정 2011.3.1>

③위원회 간사는 국제교류처 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11.3.1>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유학생 유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대학과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6조(의결)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수당 및 연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조조정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구조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구조조정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통폐합, 모집 중지 및 학과신설에 관한 사항<개정 2013.04.23>
2. 교직원의 감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구조조정규정의 변경 및 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절차) 제2조 제2호의 교직원 감원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조정규정 제13조의 교원실적평가표[별지 제1호 서식], 교원실적평가종합표[별지 제2호 서식], 교원실적평가결과표[별지 제3호 서식] 및 동 규정 제14조의 재심결과표를 교무처에서 인계 받아 검토, 심의한다.<개정 2011.3.1., 2013.3.1>
2. 교무처에서 교원실적평가종합표와 교원실적평가결과표를 인계받은 후, 구조조정규정에 의거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개정 2011.3.1., 2013.3.1>

제4조(구성 및 임기) ①본 위원회는 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입학처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3.1., 2013.3.1., 2013.04.23., 2014.04.16., 2016.3.17., 2017.10.18>

②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③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및 직무) ①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개정 2013.04.23., 2014.04.16>

②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동 규정 제4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6.12.14.>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①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6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개정 2013.04.23>

제8조(간사) ①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기획처 교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04.23., 2017.10.18>

제9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유지) ①위원회의 의결 내용만을 공개하며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토론과정과 표결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회의에 참석한 자는 그가 지득한 회의내용 및 관련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고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직원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인사위원회는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임용(채용, 승진, 전직)에 관한 사항
2. 직원포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계약직원은 전항에 대해 위원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처장, [총무회계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7.10.18.>

②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총무회계팀](#) 인사담당자가 된다.<개정 2017.10.18.>

제4조(위원장 및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총무회계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0.18.>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5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총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자의 출석)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계있는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유지) ①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의 토론과정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회의에 참석한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득한 회의내용 및 관련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고 이를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직원인사위원회규정 4-0-34~2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등록금”이라 한다) 책정을 위하여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하고, [기획처장](#), [학생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3.1., 2013.1.21., 2013.3.1., 2016.3.17., [2017.10.18](#)>

②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4인, 학생 3인, 관련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21>

③이들 위원 외에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④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되, 학생위원의 경우 [학생처장](#)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1.3.1., 2013.3.1., 2016.3.17., [2017.10.18](#)>

⑤간사는 관련 부처의 교직원이 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개정 [2017.10.18](#).>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1호는 심의에 한한다.<개정 2013.10.21>

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위원장은 회의진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부서의 업무 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수당)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사무처장 및 특수체육교육학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3.1., 2013.3.1., 2016.3.17>

②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이 된다. <개정 2013.3.1.,2016.3.17>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출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생명윤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6.>

제2조(적용범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하는 모든 연구 등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약품연구관리기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26.>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6.>

1. “연구”란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를 말한다.
2.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3.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유래물’이라 함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디앤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알앤에이(RNA: 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5. 그 외의 용어의 정의는 제2조의 관련 법률, 규칙, 기준에서 정한 정의를 준용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마. 그 밖에 본 대학교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본 대학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가. 본 대학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라. 위원에 대한 교육 <신설 2016.1.26.>

마. 위원회를 위한 표준운용지침 마련<신설 2016.1.26.>

제5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 그 밖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2.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 이외의 종사자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3. 위원 중에는 1인 이상의 외부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5. 총장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장과 같이 연구사업의 포괄적인 책임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생명윤리법을 포함한 국내외 생명윤리 관련 규범을 준수하고, 심의내용 및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 등 위원회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해 “별지 1” 비밀유지의무동의서, “별지 2” 이해상충방지서약서 및 “별지 3”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16.1.26.>

④위원회는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를 배려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이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6.>

⑥총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사임이나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후임자가 임명되기 전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피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연구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며 연구자

가 자신의 연구에 관한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해당 연구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소명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일관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장은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1인 이상의 위부인사위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의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는 승인된 연구활동 또는 업무내용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 소지를 인지하여 확인한 경우 기 승인된 연구 등의 일시적 중지 또는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 지속심사, 신속심사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심의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간사 1인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간사 1인을 둔다.

②전문간사는 위원장이 경험이 많은 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행정간사는 위원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본교 교직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5.26>**

③전문간사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규정 및 표준운영지침서의 개정을 총괄하고, 행정간사는 위원회의 의사경과와 심의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 ①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자료제출·의견진술 요구)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력을 요구하거나, 관련부서장 또는 소속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의 2(심의) ①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심의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연구계획서의 심의는 연구수행 전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승인 받은 연구계획서의 변경은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④ 1년을 초과하는 연구의 경우 최소 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심의를 해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실시 중인 연구가 위원회의 요구나 결정사항과 다르게 실시되거나 연구대상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연구의 조기 종료나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 및 그 이유를 즉시 총장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별지 4” 심의신청서를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연구책임자에게 “별지 5” 심사결과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6.]

제11조의 3(이의신청 및 재심) 연구책임자가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이내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 재심을 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6.]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출석한 자문위원과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조의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6.1.26.>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생명윤리준수서약서

본인은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배아 및 유전자 등을 취급함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국내법과 헬싱키 선언 등 국제 지침을 준수하며 연구대상자 및 기증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존중하고 연구의 결과가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경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2)

이해상충서약서

본인은 경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직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심의 중인 연구계획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스스로 이를 밝힐 것을 서약합니다.
2. 심의 받기 위해 제출되는 어떠한 계획서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지게 될 실제적이거나 가능한 모든 이해관계에 대해 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즉시 공개할 것이며, 해당 계획서의 논의나 권유에 대한 참여를 모두 포기합니다.
3. 이해갈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해당 연구계획의 심의, 권고, 혹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인)

경주대학교 귀중

(별지 5) <신설 2016.1.26.>

경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서

문서번호		발송일자	. . .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소속	
심사일자			
심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승인 () <input type="checkbox"/> 시정승인 () <input type="checkbox"/> 보완 () <input type="checkbox"/> 부결 ()		
총 연구기간			
생명윤리위원회 연구승인 유효기간	부터		까지
	<input type="checkbox"/> 총 신청 연구기간이 생명윤리 위원회 연구 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사' 승인을 받아야 연구지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연구 종료 시 종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			
심사의견	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변경요청사항 등 결정사항을 기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의신청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재심은 하지 않습니다.		

경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직인)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입생 선발 위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해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명 이상은 현직 교등학교 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5.11.>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고, [입학관리실](#) 교직원 중 1인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6.3.17., [2017.10.18](#)>

③ 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대학별고사(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별고사(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의 문제에 관한 사항
3. 대학별고사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4.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6조(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를 입학전형에 반영할 경우 그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고,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는 매년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16.3.17., [2017.10.18](#)>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